

I 제5조(학교 구성원의 책무)

- ① 학교장, 교직원,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,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I 제14조(대인 관계에서 자세)

-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.
- ② 따돌림,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깨뜨리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.
- ⑥ 욕설,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바르고 고운말을 사용한다.
-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.
- ⑨ 성(性)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.
-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.

I 제15조(시설이용 및 환경)

-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.
- ③ 특별교실과 체육관(강당)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, 사용규칙을 잘 지킨다.
-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.

I 제16조(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)

-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,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.
-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(절도행위 포함)했을 경우 해당 학생,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.

I 제17조(폭력 등에 관한 대처)

-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,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조짐을 알게 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.
-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,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.

I 제18조(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)

· 수업중 홈페이지 허락 없이 이동 금지
· 등교시간 및 교실입실시간 08:40

-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**시중시간을 준수**한다. · 08:40~08:50 학급조회시간 담임선생님께서 지각 체크
-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,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.(교사의 수업권)
-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.
-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.
- ⑩ 보건실 출입 시 담임교사 및 해당 교과시간 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 보건실에서 요양할 수 있다.

I 제19조(휴식시간)

- ④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.
- ⑤ 식생활 관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.
- ⑧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.
- ⑨ 화투,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 또는 도박을 하지 않는다.

II 제20조(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)

- ① 성냥, 라이터, 폭죽, 드라이기, **고대기**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
- ④ **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**
- ⑦ 담배, 주류, 부탄가스, 본드, 마약, 향정신성 약물 일체
- ⑧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

III

제21조(용모)

- ① 용의 복장, 두발에 대한 일괄규제는 하지 않는다. 단, 복장, 두발의 길이·모양·색상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**교사·학생·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 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.**
- ③ 타인을 비하·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,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.
- ④ 복장은 **지정된 교복으로 착용**하고 허락할 때는 자유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.
 - ⇒ 지정된 교복 : 조끼, 넥타이 포함. ⇒ 조끼, 넥타이 착용없이 셔츠만 착용시 복장불량으로 벌점대상
 - ⇒ **하복, 동복 혼용 착용 금지**
 - ⇒ 셔츠, 넥타이를 착용한 상태에서 후드티 허용(지퍼유무 무관), 12월 목폴라티 착용허용(시기학교안내)
 - ⇒ 여학생의 경우 치마를 짧게 접거나 앞뒤를 돌려 입을 행위는 금한다.
- ⑤ 교복에 부착물(명찰)은 정해진 위치에 착용한다.
 - ⇒ 왼쪽 윗가슴.(미착용시 벌점대상)
- ⑥ 두발은 길이를 제한하지 않으며 **염색은 불허 한다.** 퍼머는 **요란한 퍼머가 아닌 자연스러운 모양을 허용**하며, 무스, 젤, 스프레이, 고대기의 사용을 금한다.
 - ⇒ 탈색 불허, 진한갈색계통 만 허용, 고대기 압수품목임.
- ⑦ 귀걸이(단, 길게 늘어진 위험한 형태의 귀걸이와 피어 싱은 불허)는 허용하나 **한쪽에 두 개 이상 걸 수 없고**, 머리핀, 반지, 목걸이, 팔찌를 허용한다.
- ⑧ 동절기에는 교복 자켓 또는 점퍼를 선택해서 입을 수 있다.
 - ⇒ 제 21조 4항과 연계, 셔츠+넥타이를 착용후 교복자켓 대신 점퍼를 선택해서 입을수 있음.(동절기)
- ⑨ **치마의 길이는 무릎 위 5cm까지 허용한다.**
 - ⇒ 지정된 교복(치마, 및 바지)만 허용
 - ⇒ 지정된 교복의 모양 변형 불허(치마 앞주름 단을 박는행위)- 본교의 치마형태는 A형
- ⑩ 바지의 길이 변형은 허용하되 바지 하단에 지퍼는 부착할 수 없다.
- ⑪ 화장은 BB크림(섀 크림 포함), 틴트는 허용하되 **매니큐어(단, 투명 매니큐어 허용)와 색조화장은 불허한다.**
 - ⇒ 눈썹은 진한 갈색과 검은색으로 모양을 그리는 것은 허용
 - ⇒ 네일아트 불허
 - ⇒ 마스크라, 아이새도우, 볼터치, 아이라이너 등 색조화장은 일체 불허
- ⑫ 써클렌즈 사용은 **검정과 갈색만 허용**한다.

IV

제35조(전자기기 사용 지도)

- ③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, **해당 학생을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**
- ④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.
- ⑤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였을 시 **1주일간 학교에서 보관**하며 **2번째부터는 한 달간 학교에서 보관** **반복적으로 어길 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**한다.

V

제36조(징계의 원칙) -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회부

- 1. 준법사항에 위반된 학생
- 2. 흡연 및 음주사항에 위반된 학생
- 3. 학교 구성원 및 본인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학생
- 4. 두발, 용의 복장에 위반된 학생
- 5. 학습활동에 위반된 학생
- 6.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이행 한 학생
- 7. 교직원 및 동료학생에게 심한 욕설을 한 학생
- 8.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한 학생

VI

제37조(징계의 종류와 기간)

- 1. 학교 내 봉사 : **7일 이내의 기간**으로 하고, 출석으로 처리하며, 수업참여 여부는 학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- 2. 사회봉사 : **7일 이내의 기간**으로 하고, 출석으로 처리한다.
- 3. 특별교육이수 : 기간은 위탁기관과 협의를 거쳐 **학교위원회에서 결정**하며, 출석으로 처리한다.
- 4. 미인정결석 : **1회 10일 이내,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**으로 하고, **미인정결석으로 처리**한다.
 - ⇒ 학폭위 징계건은 생활기록부 특기사항에 필수 기록, 선도위원회 징계 건은 생활기록부 특기사항에 입력 안됨.
- 5. 훈계·훈육, 교실에서 분리조치, 상담지도,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,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.